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 김성원・윤상현・金炳旭

최승재 · 김정재 · 김석기

김형동 • 이종성 • 유상범

배현진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따라 35년 간 지속된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특히,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비수도권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으로, 이미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또한,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6조제1항제4호 및제9조의2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권의 각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 여건이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장 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한다.

4. 접경부성장촉진권역: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고, 산업의 육성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접경지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접경부성장촉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는 제9조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성장관리권역"을 "성장관리권역 또는 접경부성장촉진권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접</u>
	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
	<u>외한다.</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균
	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
	여건이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	
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접경부성장촉진권역: 인구가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 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 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 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 다.

우려가 있고, 산업의 육성 또 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 여 도시의 개발을 촉진할 필 요가 있는 접경지역

② -----성장관리권

역,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부성 장촉진권<u>역</u>-----. 제9조의2(접경부성장촉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는 제9조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 공공복 리의 증진과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권역 또는 접경부성장촉진 권역-----